

전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단4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0. 11. 27.

판결 선고 2021. 1.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13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는 원고에게 6,13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6. 27. 접수 제112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기재와 같다.

○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0. 11. 7. 송달되었고, 그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8. 6. 26.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 A의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A는 2018. 6. 26. 피고 B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가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1997. 4.경 피고 A와 혼인하였고, 1999년생 딸과 2004년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27.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들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

나. 피고 B은 늦어도 2017. 3.경부터 피고 A에게 이혼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을 요구하였다(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7. 3. 24.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꼭 와 아파트 명의이전 할 서류 준비해놨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11. 2. "온다더니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거 무의미하잖아 얘기도 다 끝났고. 우편물도 자꾸 쌓이는 거 불편해 시간 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 B은 2018. 6. 26. 광주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B을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결정하였고, 피고 A는 2018. 6.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들은 2018. 10. 1. 광주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면 피고 A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혼인신고 다음날부터 1인당 월 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그 후 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 A는 2018. 10. 15.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두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라. 한편 2018. 6.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37,000,000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7. 29.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7. 12. 20.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들의 이혼 후에도 변함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6. 26.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그 분배, 위자료의 지급, 이혼 후 피고 B의 두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서구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피.씨조 59.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광주광역시 서구

대 1347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3,478분의 30.94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는 소의 D 은행 E 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담하게 된 동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한 지급의 담보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소의 D 은행 E 지점에 제공하기 위하여 2015. 2. 13.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갑제1호증),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갑제2호증).

나.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

피고 A는 소의 D 은행 E 지점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¹⁾,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하는 각 소정의 요율에 의한 금원 등을 변제키로 하는 내용이었고,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대위변제)

피고 A는 원리금연체(판매부진, 과다경쟁)로 인하여 소의 D 은행 E 지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9. 1. 11. 금 6,320,316원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고, 금 666원을 회수하여 금 6,319,650원이 남아 있습니다(갑제5호증).

- 1) 원고는 보증계약체결일로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갑제3호증).